평생교육본부전담교원임용규정 4-2-18

규정번호 4-2-18
제정일자 2016.3.1
최근개정 2026.7.20
개정차수 5차 개정
관리부서 평생교육팀

[규정명칭 변경 2018.8.27.,2025.3.31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평생교육본부운영규정 제6조에 의한 전담교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8.08.27.,2018.12.10.,2025.3.31., 2026.7.20.)

제2조(정의) 전담교원이란 평생교육본부 학점은행제·계약학과 및 비학위과정 등을 포함한 모든 과정에서 임용된 교수를 말한다.(개정 2018.08.27., 2018.12.10.,2025.3.31)

제3조(직급) 전담교원의 직급은 교육, 연구 및 기타 경력에 따라 교수, 부교수, 조교수로 구분한다.

제4조(임용자격) ① 전담교원은 교육공무원법상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.

② 전담교원의 임용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전문대학 교수자격기준에 해당하고 다음의 조건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. 다만, 특수한 교과의 경우 교수자격 기준에 미달하나 당해 분야에 장기간 종사하여 전문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1. 전공 또는 담당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(재직자 포함) (개정 2018.12.10.)
2.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는 자
3. 주당 9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장의 동의가 있는 자

제5조(임용절차) 전담교원은 해당 전공의 주임교수 또는 평생교육본부장이 추천하고 평생교육본부운영위원회 또는 계약학과운영위원회 심의 후 총장이 임용한다.(개정 2018.08.27., 2018.12.10.,2025.3.31)

제6조(임용기간 및 재임용) ① 전담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재임용할 수 있다. 다만, 특정사업을 위한 전담교원은 그 사업기간을 임용기간으로 할 수 있다.(개정 2018.12.10.)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재임용이 여의치 못하여 해당 전공 주임교수 또는 평생교육본부장의 재임용 추천이 없을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.(개정 2018.12.10.,2025.3.31)

1. 재학생 감소로 인한 전공 및 담당교과 폐지
2. 임용 기간 내 강의평가 점수가 해당 전공 강의평가 평균 이하인 경우
3. 기타 재임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

제7조(강의시간) 전담교원의 강의시간은 평생교육본부장이 배정하되, 강사료는 총장이 별도로

정한다.(개정 2018.10.29., 2018.12.10.,2025.3.31)

제8조(예우·신분) ① 전담교원은 우리대학 학술정보원(도서관), 연구시설, 기타 교내 복지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우리대학 전임교원에 준하는 예우를 받는다.(개정 2018.08.27., 2018.12.10)

② 전담교원은 임기 중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법인 정관과 인사규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임용자격을 상실하거나 전공 및 관련 교과의 폐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(개정 2018.12.10.)

제9조(처우) 전담교원의 보수는 총장이 따로 정하되 계약에 의한다. (개정 2018.12.10.)

제10조(휴직) 전담교원은 임용기간 중 휴직할 수 없다. (개정 2018.12.10.)

제11조(준용)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 관계 법령, 법인 정관 및 인사규정, 우리대학의 제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하되,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하되,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하되, 201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5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되, 2025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.(규정명칭, 제1조, 제2조, 제5조, 제6조제2항, 제7조)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.(제1조)